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악취 민원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등 〉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01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악취 민원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등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5년 9월 23일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악취 민원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등

개정안은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민원 접수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측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악취 민원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민원 접수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악취 측정 결과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17조¹⁾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 민원 발생 시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음.

민원을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통해 악취물질 시료를 채취하면 동법 제18조²⁾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해당

1) 「악취방지법」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악취방지법」 제18조(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거나 배출허용기준³⁾을 초과할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⁴⁾하고 있음.

참고로, 2024년 기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합한 총 악취 민원 접수 건수는 38,438건, 이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 조치가 이루어진 민원은 551건임.

[악취 민원 접수 및 조치 건수]

연도	민원 발생 건수	조치결과											
		계	계	폐쇄명령	사용금지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개선권고	경고	고발	과징금	과징금
24년	38,438	551	0	3	13	125	57	253	16	23	45	6	10
23년	39,457	593	0	5	12	156	72	274	10	19	33	9	3
22년	33,592	570	0	10	13	154	54	240	11	20	54	7	7
21년	39,397	799	0	35	18	214	83	313	14	61	49	0	12
20년	39,902	705	0	15	15	147	95	317	5	44	53	3	11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은 법률상 악취검사 제도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①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이용⁵⁾하거나, ② 악취 측정 센

3)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5조(지도·점검결과와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각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5) 전북 정읍시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 운영

서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악취통합관제센터⁶⁾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등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임.

개정안은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악취 민원 처리 지연 문제가 해소되고 실시간 측정을 통해 주민의 체감 피해와 실제 측정 결과 간 차이를 줄일 수 있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취 민원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 측정이 가능한 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여건과 행정역량을 고려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부는 악취의 특성상 2시간 이내 측정을 실시하더라도 악취 발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측정인력·검사기관 등 악취 측정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며, 동시 다발적·반복 민원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하여 운영하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임

6) 경남 양산시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악취관리지역지정현황(13개 시·도, 57개 지역)

'25년 11월

NO	사 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고시일
1	울산	남구, 북구, 동구	20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2005.07.07
2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2005.07.07
3			2009-09-0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산405-3		10천㎡	해당없음
4		2014-02-0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11개필지)		20천㎡	해당없음	
5	경기	평택시	2005-05-1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송지구		5,681천㎡	2012.12.28
6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시	16,443천㎡	2012.12.28
		안산시			안산시	4,424천㎡	2012.12.28
7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2012.12.28
8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천㎡	2012.12.28		
9		오산시	2011-0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460천㎡	2012.12.28
10		화성시	2016-12-05	발안산업단지		1,268천㎡	2017.12.1
11		평택시	2018-02-13	평택일반산업단지(세교)		535천㎡	2018.2.13
12		평택시	2023-08-23	독곡동 일원 4필지(축사2개소)		8,474㎡	해당없음
13		용인시	2018-06-04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일원(축사 47, 레스피아)		247천㎡	해당없음
14	충남	서산시	2006-1-20 (2020-7-6통 합)	대산공업단지(3곳) - 대산일반산업단지 - 대산3일반산업단지 - 대죽일반산업단지 -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 대죽자원비축국가산업단지 -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 씨지엔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 - 독곶리 1 외 - 대죽리 10-1 외		17,052천㎡	2017.12.29
							2017.12.29
							2017.12.29
							2017.12.29
15		당진시	20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2,776천㎡	2017.12.29
16				송산일반산업단지		5,539천㎡	2017.12.29
17		보령시	2024-03-26	연지리 342-8 외 11필지, 연지리 342-4 외 1필지, 연지리 348 외 4필지		49,062㎡	해당없음
18	인천	남동구	2006-01-24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동·고잔동 지역		10,545천㎡	2006.1.24
19		서구		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2006.1.24
20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지역		9,171천㎡	2006.1.24
21				백석·오류동 일원		15,507천㎡	2006.1.24
22			2012-10-02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천㎡	2012.10.2
23		동구	2011-12-13	화수동 일원		273천㎡	2011.12.31
24			2012-10-02	송현동 일원		329천㎡	2012.10.2

25		부평구	2015-08-24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906천㎡	2015.8.24
26		중구	2016-12-12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638천㎡	2016.12.12
27		미추홀구	2018-11-05	인천지방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577천㎡	2018.11.5
28			2018-11-05	인천기계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245천㎡	2018.11.5
29	부산	사하구	2006-04-26	부산피혁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	15천㎡	2017.1.4
30		완주군	20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천㎡	2016.5.9.
31			2025-05-30	비봉면, 고산면 일원 (백도리 41개, 울곡리 1개 필지)	93,093㎡	2016.5.9.
32	전북	익산시	2014-01-24	익산제1산업단지	1,334천㎡	2016.5.9.
33				익산제2산업단지	3,309천㎡	2016.5.9.
34		진안군	2024-05-03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05천㎡	해당없음
35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18천㎡	해당없음
36	대전	대덕구	2008-01-01	대전 1,2산업단지 등	2,038천㎡	해당없음
						해당없음
37				대전 3,4산업단지 등	3,491천㎡	해당없음
						해당없음
38	강원	영월군	2008-0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7개필지)	102천㎡	해당없음
39		원주시	2024-04-09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해당없음
40		철원군	2024-04-09	철원군 동송읍 오재리 및 장흥리 일원	216,518㎡	해당없음
41	경북	의성군	2008-12-0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천㎡	해당없음
42		경주시	2022-05-12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2168천㎡	해당없음
43		포항시	2025-06-04	포항철강산업단지 일원 (남구 괴동동 106-1 외 32필지)	1,076,931.5㎡	해당없음
44	경남	창원시	2013-07-01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17,242천㎡	해당없음
45		김해시	2020-02-17	주촌면 선지리 214 외 26필지	28천㎡	해당없음
46				주촌면 원지리 116 외 39필지	44천㎡	해당없음
47			2020-10-13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	758천㎡	해당없음
48			2021-07-09	진영·본산리준공업지역	1,001천㎡	2021.05.21
49		함안군	2021-01-01	칠서일반산업단지	3,067천㎡	해당없음
50			2023-05-08	함안면 괴산리 673번지 외 57필지(양돈시설 11개소)	74.8천㎡	해당없음
51	전남	여수시	20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천㎡	2013.12.12
52		여수시	2019-05-02	여수국가산업단지	32,550천㎡	2013.12.12
53		여수시	2019-05-02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4,156천㎡	2013.12.12
54	제주	제주시	2018-03-23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노형동 등(축사 53)	496천㎡	2016.5.13
55		서귀포시	2018-03-23	대정읍, 남원읍, 중문동 등(축사 6)	65천㎡	2016.5.13
56		서귀포시	2019-07-19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지역 44개 악취배출시설(양돈 축산시설)	353천㎡	2016.5.13
57	대구	서구	2024-06-01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849천㎡	해당없음